

## 교내 겸직교수 임용 규정

제정 2004. 08. 25.

1차 개정 2019. 06. 2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교내 겸직교수(이하 "겸직교수"라 함)의 임용 절차,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겸직교수란 대학원, 대학, 학부, 학과, 전공, 연구원(소) (이하 "본직부서"라 한다)의 강의, 연구,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교내 전임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겸직사유)**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임교원을 겸직 임용할 수 있다.

1. 겸직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
2. 강의, 연구과제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**제4조(겸직임용 절차)** ①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겸직부서장이 본직부서장의 동의서를 첨부한 겸직임용요청서를 **교육연구처장**에게 제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9.06.25)

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**교육연구처장**이 본직부서장 및 겸직부서장과 협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9.06.25)

**제5조(겸직임용기간)** ① 겸직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② 겸직임용기간 중이라도 겸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겸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본직 부서에 복귀시킬 수 있다.

**제6조(겸직교수의 직무)** ① 겸직교수가 겸직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의
2. 연구
3. 학생지도
4. 논문지도
5. 논문심사
6. 행사참여
7. 교수회의 참석(교원인사, 교과과정개편, 내규의 제·개정)
8. 겸직 부서 교원의 업적평가에의 참여
9. 기타 필요한 업무

② 겸직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본직부서의 전임교수로 근무하며 겸직 부서에서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참여하고, 제6호 내지 제9호는 겸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한다.

**제7조(겸직교수의 업적평가)** 겸직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본직부서에서 실시한다.

**제8조(겸직교수에 대한 행정지원)** 겸직교수에 대한 연구공간, 연구비, 연구년제, 조교 등의 행정지원은 본직부서에서 담당하되, 겸직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겸직 부서에서 담당한다.

**제9조(겸직교수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)** 겸직교수에 대하여는 겸직을 사유로 업적평가, 보수, 인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.

**제10조(보칙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